

충남도립대학교 자체진단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2020.02.28. 규정 제6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대학발전, 교육, 조직, 학생지원, 시설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대학 외부평가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진단대상은 대학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진단영역) 진단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계획의 성과
2. 교육여건
3. 대학운영의 책무성
4.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5. 학생지원
6. 교육성과
7. 그 외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5조(항목별 진단) 진단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진단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진단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진단시기) 진단은 매년 실시하되 진단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진단조직

제7조(역할) ① 자체진단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체진단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진단 평가 및 진단보고서 작성·검토
2.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요구

③ 자체진단 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홍보처에서 담당한다.

제8조(자체진단위원회) ① 진단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진단평가에 필요한 기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총괄을 위한 부위원장 및 진단영역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진단 계획 수립, 자체진단 심사서 작성
2.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외부 평가시 보고서 작성
3. 위원회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대내외 평가경험이 있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부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진단방법 및 절차

제10조(계획 수립) 기획홍보처는 매 학년도 자체진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진단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진단실시 일정에 따라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홍보처에 자료를 제출한다.

제12조(진단실시) 위원회는 진단 기초자료를 토대로 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평가서를 작성한다.

제13조(실사)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진단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진단결과의 활용) 총장은 자체진단결과를 대학발전계획 수립, 교육여건 개선, 교육·연구 질 제고, 대학기본역량 평가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자체진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규정 제6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